

1. Section 232 관세 부과 개요

□ (Section 232 개념)

- 미국 무역확장법(Trade Expansion Act of 1962)에 근거한 조항으로, 국가안보 관련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또는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 부여
-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Section 232를 근거로 철강·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발표함. 이는 미국 제조업·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안보 보호를 명분으로 시행됨
- '25.6.3 대통령 포고령으로 철강·알루미늄 관세율이 기존 25%에서 50%로 인상됨

[첨부1] Adoption and Procedures of the Section 232 Steel and Aluminum Tariff Inclusions Process

□ (철강·알루미늄 section 232 관세 대상 파생제품 확대)

- 美 상무부는 철강·알루미늄 section 232 관세 대상에 407개 파생제품을 추가하고 8월 18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
- * 수출하려는 제품이 포고령에 명시된 미국의 HS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가 관세 부과 대상임. 철강 및 알루미늄이 함유된 제품 또는 부분품이더라도 포고령에 HS 코드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음

< 금번 포고령에 화장품과 연관되는 Hs code가 추가된 배경 >

- 미국 에어로졸협회(National Aerosol Association)는 미국 행정부에 완제품 화장품·퍼스널 케어 제품 에어로졸 캔을 section 232 관세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함
- 미국 에어로졸협회는, 일부 기업들이 멕시코로 철강을 수입 → 멕시코에서 캔을 생산·충전 → 미국으로 역수입하는 방식을 활용하여, 기존 25% 철강 관세를 회피하고 완제품 기준 10% 관세만 내고 들어온다고 주장

- 금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에서 화장품 관련 HS 코드는 아래와 같음

HS Code	품목명
3303.00.10	Perfumes and toilet waters: Not containing alcohol: Floral or flower waters
3303.00.20	Other
3303.00.30	Containing alcohol
3304.30.00	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
3304.99.50	Beauty or make-up preparations and preparations for the care of the skin (other than medicaments), including sunscreen or sun tan preparations;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: Other.

	Other.
3305.10.00	Preparations for use on the hair: Shampoos
3305.30.00	Hair lacquers
3305.90.00	others
3307.10.10	Pre-shave, shaving or after-shave preparations: Not containing alcohol.
3307.10.20	Containing alcohol
3307.20.00	Personal deodorants and antiperspirants
3307.49.00	Preparations for perfuming or deodorizing rooms, including odoriferous preparations used during religious rites: Other.
3307.90.00	Others
3401.30.10	Organic surface-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, in the form of liquid or cream and put up for retail sale, whether or not containing soap: Containing any aromatic or modified aromatic surface-active agent
3401.30.50	Other

□ (적용 관세 계산방법)

- 포고령에 명시된 철강·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할 경우, 제품 내 철강·알루미늄 함량의 가치에 대해서만 50% 관세가 적용되며, 나머지 미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(15%) 부과
- 철강·알루미늄 함량 가치는 해당 함량에 대해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총액(total price paid or payable)이며, 이는 해당 철강·알루미늄 함량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한 총액을 의미
- * 운송, 보험 및 국제 선적 관련 서비스에 대한 비용, 수수료, 경비를 제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비용에 해당하며, 일반적으로 철강·알루미늄 함량에 대한 송장(invoice)에 기반함

□ (자주하는 질문)

- 미국 CBP(관세국경보호청)에서 발간한 철강·알루미늄 section 232 관세 부과 관련 FAQ는 아래 링크 참조
 - * Section 232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Frequently Asked Questions
<https://www.cbp.gov/trade/programs-administration/entry-summary/232-tariffs-aluminum-and-steel-faqs>
 - 우리나라 KOTRA에서 발간한 FAQ는 첨부파일 참조
- [첨부2] 2025.06.18 발행 KoTRA_美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대응 FAQ**
- ※ 첨부 2 자료는 6월 18일에 발행되었으므로 내용 중 상호관세율이 25%로 언급되어 있으나 2025년 8월 20일 기준 상호관세율은 15%으로 변동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. [산업부] 對美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 컨설팅 핫라인

- 아래 기관에서 함량 기준 가치를 증빙해야 하는 對美수출 중소기업 대상 법률·회계자문 및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업무 지원하고 있음

분류	기 관	연락처	이메일	비고
법무 법인	세 중	비공개	section232@shinkim.com	기본 컨설팅 (법률자문) 한정
	화 우	02-6182-8135	jjjahng@yoonyang.com	
회계 법인	안진 (딜로이트)	02-6138-5180	jonshim@deloitte.com	
			yurhong@deloitte.com	
	DKC	010-4851-2780	chanjoolee@dkc-kr.com	
	KPMG	02-2112-0823	wpark@kr.kpmg.com	
	ITC	02-2051-6810	cwjung@theitc.co.kr	
	삼일	02-709-7012	seung-wook.lee@pwc.com	
02-3781-2338			joong-hyun.kim@pwc.com	

- * 지원 대상 : 對美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(철강·알루미늄 함량 계산 필요 품목)
- * 지원 내용 : 기본 컨설팅 + (필요시) 통관 서류 대행